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134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 제안이유

- 소음·진동규제법이 개정(2002.12.30, 법률 제6845호)됨에 따라 소음·진동 배출시설 사무의 집행에 관한 수수료를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
- 소음·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,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정하여 관련업무 처리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

 주요골자

- 소음·진동배출시설의 설치 관련 수수료 신설
 - 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: 1건당 10,000원
 - 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: 1건당 5,000원

 의안전문 : 따로붙임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단위 : 원)

구	분	기준	요액
차. 환경관계			
(1)	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	1건	10,000
(2)	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	1건	5,0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제증명등수수료요금표 (단위 : 원)			제증명등수수료요금표 (단위 : 원)		
구 분	기 준	요 액	구 분	기 준	요 액
2 인가,허가,신고,신청,등록 시설확인 등 가.~자. (생 략) <u><신 설></u>			2 인가,허가,신고,신청,등록 시설확인 등 가.~자. (현행과 같음) <u>차. 환경관계</u> (1) <u>소유·전동배출시설 설치허가</u> <u>신청</u> (2) <u>소유·전동배출시설 설치신고</u> <u>또는 변경신고</u>	1건 1건	10,000 5,000

관계법령 발췌

□ 소음·진동규제법

第9條(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 등)①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·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다만, 學校 또는 綜合病院의 周邊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市·道知事の 許可를 받아야 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 또는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申告한 事項이나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市·道知事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.

第55條(手數料)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6845호,2002.12.30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)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□ 소음·진동규제법시행규칙

제90조 (수수료)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: 1만원
2.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